

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년 2월 12일
의회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1월 23일, 운영회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1월 23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25년 2월 12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정보 및 의원의 의정 활동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.
- 홍보활동의 원칙, 방법 및 홍보내용(안 제3조 ~ 제5조).
- 누리집, 사회관계망 서비스 설치 및 운영(안 제6조 ~ 제7조).
- 홍보영상 등 제작(안 제8조).
- 홍보매체의 제작·운영 등의 위탁(안 제9조).
- 자료관리(안 제10조).
- 공모·참여행사 등(안 제11조).
- 개인정보 보호(안 제12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김하영

나. 검토의견

1) 제정 이유

-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정보 및 의원의 의정 활동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2) 주요 내용

- 가)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) 홍보활동의 원칙, 방법 및 홍보내용(안 제3조 ~ 제5조)
- 다) 누리집, 사회관계망 서비스 설치 및 운영(안 제6조 ~ 제7조)
- 라) 홍보영상 등 제작(안 제8조)
- 마) 홍보매체의 발행·제작·운영 등의 위탁(안 제9조)
- 바) 자료관리(안 제10조)
- 사) 공모·참여행사 등(안 제11조)
- 아) 개인정보 보호(안 제12조)

3) 검토 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으로 인한 우리구 의회의 독립적인 권한 증대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정활동이 증가되는 시점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공모·참여행사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임
- 해당 제정 조례안은 누리집,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의정활동 및 성과를 구민과 소통·공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 의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각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됨

- 다만, 홍보영상 및 간행물의 배포, 기념품이나 상품원 등의 제공시 「공직선거법」 저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발생의 여지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임
- 2025년 1월 기준 전국 50개(서울 2개 포함)에 달하는 지방의회에서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
- 따라서, 우리구의회에서 의정 정보 등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소통하기 위해 홍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,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